

농산물 관련 수수료(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

가. 신청수수료

항 목	수수료(원)
○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 신청	50,000원 (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,000원씩을 추가하되,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)
○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	30,000원 (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,000원씩을 추가하되,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)
○ 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	20,000원 (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,000원씩을 추가하되,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)

*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,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.

나.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(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)

- 1) 교통비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.
- 2) 일비·식비·숙박비: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(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)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·식비·숙박비를 징수한다.

다. 토양·수질·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: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(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).

2.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

가. 신청수수료

항 목	건 수	수수료(원)
○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(신규·갱신)	1	100,000

나. 현지 심사·관리를 위한 출장비

- 1) 교통비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시설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산정한다.
- 2) 일비·식비·숙박비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

을 적용하여 일비·식비·숙박비를 산정한다.

다. 심사·관리비

- 1)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심사보고서 작성 및 그 밖에 심사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2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)에 따른 심사·관리비 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.

3.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

가. 신청 수수료(국내외)

항 목	건수	수수료(원)
○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(신규·갱신)	1	200,000
○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온라인 지정신청(신규·갱신)	1	190,000

나.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(국외)

- 1)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.
- 2)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,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,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(實費)로 한다.

4.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

항 목	건수	수수료(원)
○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	1	20,000
○ 지리적표시의 무효·취소심판 청구, 등록 거절·취소에 대한 심판청구, 재심청구	1	170,000
- 온라인 청구	1	150,000
○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	1	14,000
- 온라인 청구	1	4,000
○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·기피 신청	1	1,500
○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	1	당사자: 150,000 보조참가: 18,000
○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	1	500
○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	1	400

5.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

항 목	건수	수수료(원)
○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	1	200,000

6. 삭제 <2013.3.24>

7.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

항 목	건수	수수료(원)
○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신청(신규·갱신)	1	200,000

8. 농산물 검사수수료

종류별	품 목	중량	단위	수수료(원)
곡류	○ 쌀	40kg	대	30
	○ 녹두	40kg	대	30
	○ 그 밖의 곡류 모든 품목	40kg	대	20
서류	○ 모든 품목	40kg	대	20
특용작물류	○ 참깨	40kg	대	40
	○ 그 밖의 특용작물 모든 품목	40kg	대	20
과실류	○ 모든 품목	15kg	상자	20
채소류	○ 고추	20kg	대	30
	○ 그 밖의 채소류 모든 품목	20kg	대	20
잡사류	○ 누에씨	시·도지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.		
	○ 누에고치			
수입농산물류	○ 정곡(현미포함)	1톤	-	70
	○ 그 밖의 수입농산물류 모든 품목	1톤	-	60

비고: 위에서 정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품목의 종류별 검사수수료를 우선 적용하며,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수수료 중 가장 낮게 설정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.

9. 농산물 검정수수료

분야	검정항목	세부 검정항목	단위	항목당 수수료(원)
품위· 품종 및 일반성분	가. 품위	○ 정립, 피헤립, 이중중자, 이물, 용적중, 싸라기, 입도, 이중곡립, 분상질립, 착색립, 사미, 세맥, 다른 종피색, 과균 비율, 색갈 비율, 결점과율 ○ 회분 또는 조회분 ○ 사분	1항목	8,600
			1점	13,700
			1점	17,200
	나. 발아율	○ 발아율, 발아세	1항목	30,800
			1항목	9,100
	다. 도정률	○ 미곡의 제현율, 현백률 ○ 맥류의 정백률	1항목	18,200
			1점 (24립)	320,000
	라. 품종	○ 벼·현미·쌀(정량) ○ 벼·현미·쌀(정성)	1점 (6립)	100,000
			1점	12,000
	마. 일반성분	○ 수분	1점	12,000

		○ 단백질	1점	26,000
		○ 지방	1점	26,000
		○ 조섬유	1점	8,600
		○ 산가	1점	8,600
		○ 산도, 당도	1항목	8,600
무기성분 및 유해물질	가. 무기성분	○ 칼슘, 인, 식염, 나트륨, 칼륨 등 ○ 질산염, 아질산염	1성분 1성분	46,000 15,000
	나. 유해 중금속	○ 카드뮴, 납 등	1성분	40,000
	다. 잔류농약	○ 클로로피리포스, 엔도설판, 디디티 (DDT), 프로시미돈, 다이아지논, 카벤다짐 등. 다만,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.	1성분	81,400
	라. 곰팡이 독소	○ 아플라톡신 B1, B2, G1, G2 등	1성분	87,000
	마. 항생물질	○ 항생제 ○ 합성항균제 ○ 호르몬제	1성분 1성분 1성분	40,000 40,000 180,300
	바. 방사능	○ 세슘, 요오드	1점	50,000

비고

-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.

10. 농지, 용수, 자재 검정수수료

구분	분야	세부 검정항목	단위	항목당 수수료(원)
가. 농지 (토양)	무기성분 및 유해물질	○ 카드뮴, 구리, 납 ○ 비소 ○ 수은 ○ 6가크롬, 아연, 니켈	1성분	10,600 8,700 18,300 18,300
나. 용수 (하천수·)	무기성분 및	○ 크롬, 아연, 구리, 카드뮴, 납, 망간, 니켈, 철	1성분	6,900

호소수)	유해물질	<input type="radio"/> 비소 <input type="radio"/> 셀레늄 (원자흡광광도법) <input type="radio"/> 6가크롬 <input type="radio"/> 수은		13,900 6,000 6,900 10,600
다. 용수 (먹는물· 먹는샘물)	무기성분 및 유해물질	<input type="radio"/> 구리, 카드뮴, 납, 아연, 알루미늄, 망간, 철 <input type="radio"/> 셀레늄 <input type="radio"/> 비소 <input type="radio"/> 수은 <input type="radio"/> 6가크롬	1성분	6,100 6,600 7,700 6,600 3,900
라. 자재 (비료·축 분·깔짚 등)	무기성분 및 유해물질	<input type="radio"/> 질소, 인산, 칼륨 등	1성분	10,600
		<input type="radio"/> 카드뮴, 비소, 납, 수은 등	1성분	11,800

비고: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.